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19. 5. 16.(목) 총 3매(본문2)	
담당 부서 건축정책과	담당 자	• 과장 남영우, 사무관 박종근, 주무관 정인원 • ☎ (044) 201-3756, 3757	
보도일시		2019년 5월16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인터넷은 5.15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국토부, 올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7월까지 3개월간 전국 243개 지자체 서비스 평가...우수기관에 장관상 수여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전국 243개 지자체(광역 17, 기초 226)를 대상으로 「2019년도 건축행정 평가」를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시행한다.
 - 국토교통부는 1999년부터 매년 「건축법」 제78조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·점검하기 위하여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,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게 장관상을 수여한다.
 - * 2018년 우수 지자체 대전시(최우수), 세종시·충남(우수) 등 20개 지자체 선정
- 올해 평가는 지자체의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부문 평가와 대국민 건축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‘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사례’에 대한 특별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할 예정이다.
 - 일반부문 평가는 건축허가(신고) 처리기간 준수여부, 시공 및 철거단계 안전사고 발생 등을 평가하며,
 - 특별부문 평가는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추진한 건축행정 서비스 성공사례를 평가한다.
 - * 2018년에는 ‘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행정 사례’를 주제로 울산광역시 ‘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관련자 교육 실시’와 인천광역시 남구 ‘지질조사 보고서 작성대상 추가확대 시행’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

- 또한,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예정이며, 최종 평가결과 발표 전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.
- 건축행정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작년과 같이 국토교통부는 광역지자체를,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를 평가할 예정이다.

□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“건축행정 평가를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박종근 사무관(☎ 044-201-375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

2019년도 건축행정 평가의 평가지표

평가항목	평 가 지 표	2019년	
		광역시(10)	기초(14)
1.건축행정 절차 합리성	○건축심의 기준의 적합여부	5	-
	○건축심의결과 공개	10	10
	○건축허가·신고 처리기간 준수여부	-	10
2.시공·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	○시공 및 철거단계 안전사고발생	-	10
	○착공 및 사용승인 처리기간 준수 여부	-	10
	○공사중단 건축물 관리 실적	10	-
	○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적	15	-
3.유지관리 적절성	○건축물 유지·관리 점검 이행실적	-	15
	○위반건축물 관리 실적	-	5
	○시정조치 미이행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실적	-	5
4.건축행정 전문성	○건축허가 신고 담당부서 총 인원대비 건축직 공무원 비율	5	4
	○건축직 공무원 대비 전문자격 보유자 비율	5	3
	○건축행정 관련 전문교육 이수 실적	5	3
	○1인당 건축허가·신고 건수	-	5
	○건축 관련 민원 감축률	10	5
5.건축행정 개선 노력도	○건축정책 이행도	20	10
	○지자체 자체 노력도	15	5
합 계	17개 평가지표	100	100

※ 건축정책 이행도 세부지표

구분	'19년	비고
광역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인센티브 홍보 및 지원실적(5점) ○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(5점) ○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(고시) 실적(5점) ○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추진실적(5점) 	
기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인센티브 홍보 및 지원실적(2점) ○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(2점) ○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·시행실적(2점) ○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추진실적(2점) ○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실적(2점) 	

